

防炎에 대한 小考

李 汀 然

國立警察大学 附設 消防学校 教学科長

改正消防法第11條로서 高層建物 學校 共同住宅 工場 市場 百貨店등 特殊場所의 카페이나 其他內裝物등의 物品은 防炎性能이 있는것으로 使用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防炎에 関한 研究와 手段은 어제 오늘에 生겨진 일이 아니고 아득히 紀元前 4世紀에 까지 거슬러 올라 갈 程度로 오래 된 史實을 들 수 있습니다만 火災時 可燃物 즉 着火物의 燃燒를 되도록 極少化시킴으로서 被害減少를 期한다는 点에서 볼때 防炎이란 매우 重要的 일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火災事故가 年々增加되고 大火災가 잇따라 發生하는 昨今의 実情을勘察할때 改正消防法에서 防炎處理 規制가 세로히 設定된것은 建物火災에 對한 防火對策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防炎處理를 함으로 해서 오는 利得이 他人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곧 自身의 被害를 火災로부터 輕減시켜 줌으로써 직접 利害에 直結되는 것인데도 막상 火災를 當하고 보면 몹씨 아쉬워하면서도 平常時には 簡便히 決斷을 못내릴만큼 理解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事実입니다. 물론 消火器具類가 불을 꺼주는데 絶対性을 지니지 못하고 있듯이 防炎處理로서 火災의 被害를 전혀 안입게 된다는 過信도 안 될 일입니다만 여기에서는 防炎에 對한 輪廓을 紹介해 보려고 합니다.

定義： 防炎(Fire Retarding, Flame Retarding)이란 한마디로 可燃性(可炎性) 物質을 遅炎 難炎 또는 不炎의 狀態 즉 適格基準에 드는 狀態로 만드는手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防炎은 消火作用도 아니며 전혀 타지 않게 하는 것 도 아닌 것입니다. 大概의 火災現場을 보면 消防

隊가 到着했을때 이미 것잡을 수 없이 延燒擴大의 경우를 許多하게 볼 수 있는데 그 延燒速度와 範圍를 極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 防炎의 歷史

防炎에 関한 沿革을 歷史的으로 살펴보면 B.C(紀元前) 4世紀頃 Troy戰의 勇將 에네스(Aeneas)가 木材에 食醋를 발라 耐火性을 주도록 奨励한 일이 있습니다. 또 Claudius의 年鑑記錄을 보면 紀元 83年 Piraeus 包圍作戰에서 使用했던 공擊用木材사다리에 明礮을 발라 火攻으로부터 保護한 일이 있습니다. 한편 織物의 防炎技術은 比較的 새로운 것으로 1638年 出版된 Sabatini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當時 教會 風景画를 그리는데 쓰는 塗料에다 石膏과 粘土 顏料를 섞어 혼합하여 쓴으로서 火災予防과 安全感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防炎에 関해서 特記할만한 記錄은 1735年 美國에서(特許 55)로 Obadiah Wyld가 明礮, 硫化金屬 그리고 硼砂로 混合된 防炎剤로서 特許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後 1821年 佛國의 gay-Lussac는 亞麻와 大麻에 對한 防炎處理法을 開發함으로서 크게 功獻한바 있습니다. 또 1850年부터 水溶性·非水溶性 防炎剤 研究가 계속되었으며 1912年 W. H. Perkin이 酸化錫을 써서 編織物의 可洗防炎 法을 開發했으나 残炎問題로 失敗한 일이 있습니다. 그後 하로겐有機質, 非溶性金屬鹽과 酸化物의 混合物을 防炎剤로 쓰기 始作하므로서 科學化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技術革命이 1930年代初까지 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2次世界大戰을 통해 그重要性이 認定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다시 말해 1930年代末頃부터 急進展을 보게되어 現在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 各國의 防炎実情

美國

1894年 젊은 技術인 윌리엄 메릴(William Merrill)이 美國의 火災保険協會로부터 支援을 받아 建築資材의 耐火度를 實驗하기 為한 研究所를 設立, UL(Underwriters Laboratory)로 命名, 그뒤 世界最大의 安全實驗機構가 이룩되었읍니다. 더욱이 492名의 人命을 앗아 간 보스톤 코코날 그로브 나이트 클럽火災가 일어 난 1942年以來, UL은 더욱 研究에 拍車를 加했으며, 1954年에는 可炎織物法(Flammable Fabrics Act) 施行以後 数많은 法令으로 防炎을 必須化하게 했읍니다.

日本

1950年頃: 美駐屯軍에 依해 防炎이 導入되었으며
1952年: 防炎試驗規則 制定되었고
1961年: 火災予防條例가 施行(防炎必須)되었고
1962年: 防炎協會가 設立되었고
1964年: 建設省 防炎씨이트(工事用) 規制가 設定되었고
1966年: 東京消防庁 카아펠防炎規制가 設定되었읍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防炎은 1973年 2月 消防法이 改正됨에 따라 必須化 施行을 보게 되었으나 實際로는 그보다 앞서 1960年代에 國內 몇個 民間業체가 美國 및 日本의 技術을 迎入, 防炎剤를 生産·販賣한 일이 있었고當時에는 防炎剤의 効果 未治과 一般의 認識不足으로 明滅狀態를 계속해 왔으며 더욱이 法的規制 全無로 特記할만한 實績이 없었읍니다.

* 防炎處理 対象(消防法第11條 및 同法施行令第9條 參照)

高層建築物·學校·

共同住宅·工場·市

場·百貨店·圖書館

·地下街·劇場·호

텔·病院·카바레·

페스홀·나이트클럽

카렌·内裝物

展示用合板

* 防炎性能의 基準

防炎性能의 基準은 消防法施行令과 同法施行規則에서 制定되겠으나 천(布: 短은것과 두꺼운 천으로 区分)과 合板·纖維板別로 一定한 接炎(micro Burner 등)에 依해 残炎時間, 残存時間, 炭面反應(炭化面積과 炭化길이) 등의 基準을 定해서 燃燒시험·吸濕시험·引張시험·腐蝕시험등을 거치게 한後 適格基準에 맞도록 하고 있읍니다. (가까운 日本에서는 防炎協會에서 認定하고 있음)

<参考> 各國의 纖維製品 防炎規制

國 別	對 象	1971까지	1972年	1973年
美 國	衣類, 인테리어 카아펠, 라구 児童寝衣 베트레스 毛 布 航空機 및 乗務服 船 舶 自動車 内裝 카렌類 玩具	可燃織物法 (1954年施行) 告示施行 1971 告示 1971 基準告示 基準告示 1970 FAA 1969 COAST GUARD FHA 告示 各州法 児童保護玩具安全法 1969	発効5031	施行7.28 施行3.31
カ나다	纖維製品	可燃基準 1971		
英 國	児童 老人 寢衣 航 空 機	消費保護法 1961 内装基準 1956		
佛 國	500噸以上 商船 建材内装	法令59191 1959 内務省令 1957		
日 本	카렌 工事用씨이트 부라인드, 展示用合板 鉄道카렌 内装 自動車카아펠	消防法 1969 鐵道監督局 1969	消防法 施行令 JIS作成	施行 1.1

結語

위와같은 内容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防炎規制는多少 뒤늦은 感도 없지 않으나, 우리 人類만이 갖는 特權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 使用이고 보면 可燃性物品의 完全除去란 不可能할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火災로부터 입는被害를 防止하기 為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은 特殊場所와 特定物品에만 極限할것이 아니라 一般住居用 建物에서 카렌類는 勿論 모든 内裝物의 可燃物品은 防炎性能이 있는 物品을 使用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防炎規制에 따른 性能시험이라든가 認定 그밖에 防炎表示制度등 곧 施行되겠읍니다만 이를 參考하시어 火災防止에 도움이 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디.